## 판교권역 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 특화 육성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2019. 08.



### 제 출 문

## 성남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시로부터 의뢰 받은 「판교권역 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 특화 육성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08.

참역연구진

책임연구원안 영 찬연 구 원박 진 용연 구 원황 성 호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내용적 범위 ···································
제	2 장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 현황
제	1 절 문화산업진흥지구 개요 ···································
1.	정책변화의 흐름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개념 및 현황은
3.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용
	2 절 성남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11
1.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11
제	3 장 중앙정부 정책 및 제도 분석13
제	1 절 지역특화발전특구15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15
2.	지정 신청 및 운영절차16
3.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규제특례)23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23
5.	지역특화발전특구 사례

제	2 절 강소연구개발특구30
1.	강소연구개발특구 개요
2.	지정 신청 및 운영절차31
3.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35
4.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39
5.	강소연구개발특구 사례40
제	3 절 소 결46
제	4 장 정책 및 제도 활용방안47
제	1 절 판교권역 여건 분석49
1.	판교권역 주요 정책(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49
2.	판교권역 현황 분석51
제	2 절 정책 및 제도 활용방안60
1.	지역특화발전특구
2.	강소연구개발특구62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65
제	1 절 결론 및 정책제언67
부	록 ⋯⋯⋯⋯⋯⋯⋯⋯⋯⋯69
지	격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71

# Contents

## 표 목 차

<⊞	1> 문화산업 클러스터 개념과 혜택	•••7
<⊞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현황	<b>.</b> 8
<⊞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세부내용	·17
<⊞	4>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23
<⊞	5> 연도별·유형별 지정현황 ······	24
<⊞	6> 지역별·유형별 지정현황	25
<⊞	7> 194개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26
<⊞	8> 기존특구와 강소특구 비교	30
<⊞	9> 평가 방법	32
<⊞	10> 강소특구 배후공간 및 개요	:39
<⊞	11> 유사제도 비교	46
<⊞	12> 판교테크노밸리 면적 현황	<b>5</b> 1
<⊞	13>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b>5</b> 2
<⊞	14>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도계획	<b>·</b> 57
<⊞	15> 판교 제2테크노밸리 유치 업종	<b>-5</b> 9
<₩	16> 적용가능 특례	<b>-6</b> 0

## Contents <u>JRK</u>

ᄼᄀᄘ	1	연구의 흐름
\ <u>_</u>	1/	한구의 <u>우</u> 급
<그림	2>	성남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위치도11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신청절차19
<그림	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절차20
<그림	5>	운영성과 평가방법21
<그림	6>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계획49
<그림	7>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그림	8>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도계획58
<그림	9>	유치업종 배치계획도59
<그림	10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구역 예시61
<그림	11: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예시63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②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요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선7기 정책사업인 정자·판교권역을 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 특화를 위한 세부 과제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지정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검토 중에 있음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현재 정책여건과 지정효과면 에서 성남시 정책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이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진흥지구로만 한정하지 않고 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및 법·제도(지구, 특구를 중심으로)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음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내용적 범위

-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실태 분석
- 지구 및 특구 관련 정부의 정책 분석
- ⊙ 정부정책 비교 분석
- 도입 가능한 정부 정책 및 제도 제시

###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현재 성남시에서 지정 운영 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판교테크노밸리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하고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발굴 제시하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중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지구, 특구관련 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비교 분석 함
- 검토된 제도의 적용시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도입가능 한 정부 정책 및 제도를 제시하고자 함



<그림 1> 연구의 흐름

### 제 2 장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 현황

- ① 문화산업진홍지구 개요
- ② 성남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제 2 장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 현황

### 제 1 절 문화산업진흥지구 개요

### 1. 정책변화의 흐름

-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문화산업지원정책의 시초는 2000~2002년에 실시된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문화산업집적지 조성이었으며, 이후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그리고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이 지역문화산업 지원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표 1> 문화산업 클러스터 개념과 혜택

구분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시설
개념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 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된 산업단지	문화 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 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 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문화 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 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혜택	<ul> <li>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5종)</li> <li>각종 안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하찬도로공사 시행 및 점용 등 34종)</li> <li>세제혜택(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면제 등)</li> </ul>	•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종) •각종 안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하천도로공사 시행 및 점용 등 9종)	<ul><li>각종 부담금 면제(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7종)</li><li>세제혜택(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면제 등)</li></ul>
법적 근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은 인위적으로 단지에 업체, 연구소, 대학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완성까지의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8년부터는 비용 대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문화관련 기관들의 집적지를 대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 문화산업진흥지구 정책은 자생적인 문화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사업투자 대비 효율성 증대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나 2010년 이후 추가 지정된 지구가 없음

###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개념 및 현황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법제 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 기업 집적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집적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상호 교류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일정지역을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임
- 2019년 현재 총 11곳의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 운영 중에 있음

<표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현황

지 역	중점 유치업종	위치	면적(m²)	지정일
부산	영상, 게임	해운대구 우동(센텀시티 일원)	343,959	2008. 2. 29
대구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남구 대명동(구 계명대 부지)	117,666	2008. 2. 29
대전	첨단영상(영화), 게임	유성구 도룡동(엑스포공원 일부)	388,570	2008. 2. 29
부천	만화, 애니메이션	원미구 상동(영상문화단지 일원)	600,263	2008. 2. 29
전주	한 스타일, 영상	완산구 중노송동, 교동, 풍남동, 고사동 (정보영상벤처타운,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	472,138	2008. 2. 29
천안	문화디자인	문화동, 대흥동, 성황동, 오룡동, 원성동 일원(천안역 인근)	306,782	2008. 2. 29
제주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이도2동(제주시청 인근)	127,657	2008. 2. 29
인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남구 도화동 일원	263,164	2008. 12. 2
고양	방송영상(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장항동 일원 오피스집적지구 (라페스타, 웨스턴돔 주변지역)	664,710	2008. 12. 2
성남	게임산업 및 IPTV산업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	1,246,826	2010. 2. 17
안동	영상, 공예, 공연/전시산업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512,581	2010. 1. 21

### 3.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주 요 내 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 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지구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고, 인허가 혜택이 주어짐

구 분	주 요 내 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함(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8조의 3제3항)

구 분	주 요 내 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지구조성자에 대한 부담금 및 각종 인허가 면제를 통한 지원이 존재하나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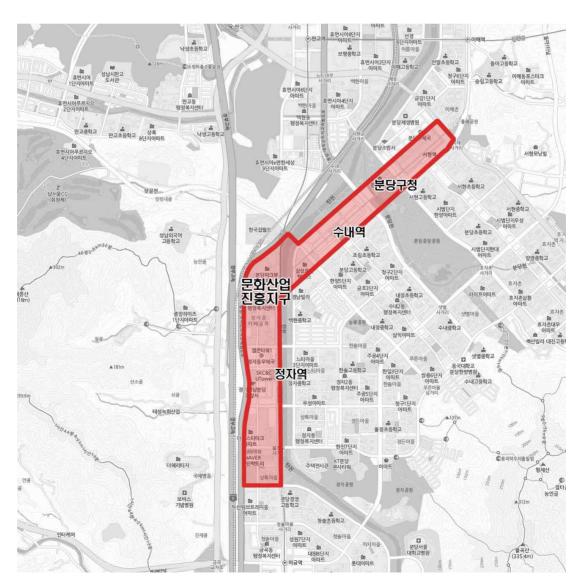
### 제 2 절 성남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 1.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 2009. 10. : 성남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 2010. 2. : 성남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지정구역 : 서현동, 정자동 일대 124만 6,826㎡



<그림 2> 성남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위치도

### 제 3 장 중앙정부 정책 및 제도 분석

- 기억특화발전특구
- ② 강소연구개발특구
  - ③ 소 결

제 3 장 중앙정부 정책 및 제도 분석

### 제 1 절 지역특화발전특구

### 1.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일률적인 규제는 지방의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됨
-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
- 특정지역의 규제특례를 활용한 특구사업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립형 성장동력 확립
- 지역별 특화된 발전에 의한 산업집적 및 신규산업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구 제도는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역특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률적인 정부규제에서 탈피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비교 시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중앙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

- 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세제·제정지원 혜택이 없으며 사업추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조달하며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추진주체, 사업내용, 대상지역에 있어 지자체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함
- 특화사업재원이 지자체의 자체 재원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규제특례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

#### 2. 지정 신청 및 운영절차

### 1) 지정 요건

- 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특구지역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지역이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지정할 수 있음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동일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구지역 내에서는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함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화 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해야 함

### 2)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구의 개요(명칭·위치·면적, 특구 지정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건폐율·용적률 규제특례 등의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및 적용범위, 재원조달방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사업의 종료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재 생략),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특구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적용 시에만 작성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량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표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세부내용

관련조항	세부내용
법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특화사업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합의하여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설치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사항 포함
법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의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한정함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영제한 가능하며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해야 함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함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1호, 소음·진동관리법 제8호 제1항 및 제2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함

### 3) 지정절차

- 기초 지자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화 발전목표에 맞추어 구체화된 특화사업 내용을 담은 특구계획안 마련
- 특화사업 및 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내용 등을 포함
-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경우 난개발,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급등 등 지역개발로 인한 부작용 방지장치 포함
- 특구계획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신청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는 신청된 특구계획안에 대해 90일 이내 심의 하여 결정
- 특구위원회는 신청사업이 지역의 특화발전방향에 맞는지, 규제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 신청절차

### 특구 계획(안) 수립 및 주요내용 공고

개요 및 지정 필요성, 특구토지 이용계획, 규제특례, 재원조달 등

### 특화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후부터 30일 이내 지정

### 계획(안) 열람 및 의견청취

열람기간 : 특구 계획(안) 공고일로부터 6일 경과 후 4일 이상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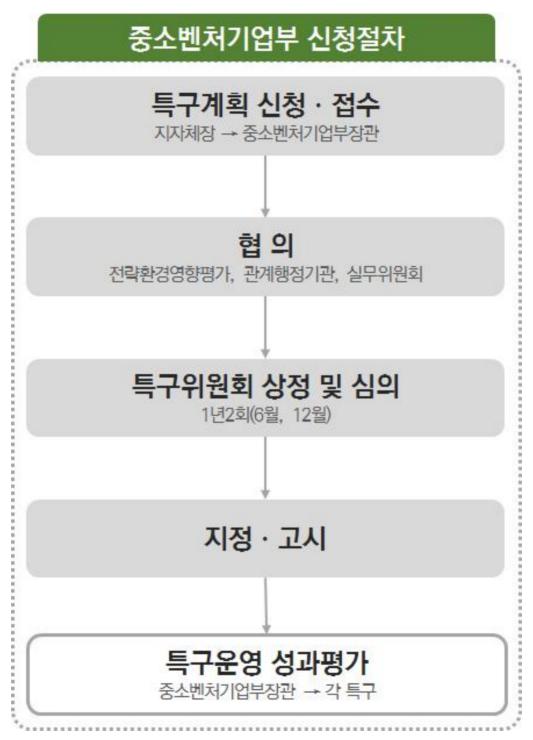
### 지방의회 의견청취

개별법에 의한단일 시업들의 연계를 통한 복합적 시업 지원 중심으로 실행

### 특구토지 이용계획 심의(필요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신청절차



<그림 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절차

#### 4) 평가 및 관리

#### (1)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 지역특구의 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월 31일까지 전년도 특구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함
- 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특구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는 특구운영성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내용, 특구운영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특구운영의 평가를 완료해야 함
- 평가기준은 선·후발 특구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개발특구와 운영 특구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일자리창출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 개발특구 : 인프라 구축 등 특구개발 위주의 특구지정 2년 미만인 특구
- 운영특구 :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하는 사업운영 위주의 2년 이상인 특구



<그림 5> 운영성과 평가방법

●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특구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특구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부진특구에 대해서는 특구계획 변경 및 권고 등 지역특구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2) 지역특구 지정해제

#### 가. 직권 해제 및 변경사유

- 중소기업청장은 특구 직권 해제 및 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특구지정이 직권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 내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없음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 특구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 나. 신청에 의한 변경 및 해제

- 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변경·해제하기 전에, 6개월간의 기간을 주어 특구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등을 특구관할 지자체장이 신청하게 할 수 있음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 특구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 ·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 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그 외에 중소기업청장이 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규제특례)

- 총 59개 법률에 대한 132개의 규제특례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196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80개의 규제특례를 활용하고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는 일반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및 권양이양 규제특례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됨

구 분 내용 - 근거법의 규제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 일반 규제특례 제권한을 이양 (63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총 63개 특례로 구성 토지이용 규제특례 -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법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핵심으로 함 (54개) - 용도지역 변경,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총 54개 특례를 적용 - 관광·레저업 육성이나 축제 개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급 기관이 보유한 권양이양 규제특례 각종 행정권한을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제내용을 정할 (15개) 수 있도록 허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 등 15개의 규제특례로 구성

<표 4>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 1) 지정현황

- 2019년 1월 기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198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유형별 특구지정 현황은 향토자원유통 93개(47.0%), 관광레포츠 48개(24.2%), 교육 33개(16.7%), 산업연구 19개(9.6%), 의료복지 5개(2.5%)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특구지정 추이를 살펴보면 특구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2012~2013년 사이에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도별·유형별 지정현황

(단위 : 개)

지정년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연간합계	지정누계
2004	2	2	1	1	-	6	6
2005	18	7	5	3	2	35	41
2006	19	5	3	3	1	31	72
2007	11	5	4	5	-	25	97
2008	7	9	4	1	1	22	119
2009	7	5	1	1	-	14	133
2010	5	3	2	1	-	11	144
2011	4	1	2	1	-	8	152
2012	-	1	2	-	-	3	155
2013	1	2	1	1	-	5	160
2014	7	-	-	-	1	8	168
2015	6	2	2	-	1	11	179
2016	6	6	3	1	-	16	195
2017	2	5	3	1	1	12	207
2018	1	-	-	1	-	2	209
2019	-	-	1	1	-	2	211
지정해제	3	5	1	2	2	13	
Й	93	48	33	19	5	198	

자료 : 지역특구 지정현황(2019.1),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별 특구지정 현황은 광역시보다 도 단위의 지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 보다는 농촌,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에서 지역특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1월 기준 지역별 특구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22개 기초 지자체에 40개, 경북 21개 기초 지자체에 28개, 경기도가 17개 기초 지자체에 18개가 지정되었으며, 도단위의 지정이 120개의 기초 지자체에 165개로 전체 특구 중 83.3%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지역별·유형별 지정현황

(단위 : 개)

지역	유형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서울	(12)	1	2	7	-	3	13
부산	(7)	1	4	2	-	-	7
대구	(2)	1	1	-	2	-	4
인천	(3)	1	1	1	-	-	3
광주	(3)	1	1	1	-	-	3
대전	(2)	-	1	-	-	_	1
세종	(0)	-	-	-	-	-	0
울산	(2)	1	1	-	-	-	2
경기	(17)	4	6	3	5	-	18
강원	(12)	7	4	-	3	_	14
충북	(11)	8	3	1	2	_	14
충남	(12)	13	1	4	-	_	18
전북	(11)	7	3	-	3	2	15
전남	(22)	22	8	9	1	_	40
경북	(21)	18	6	3	1	-	28
경남	(12)	7	4	2	2	-	15
제주	(2)	1	2	-	-	-	3
합계	(151)	93	48	33	19	5	198

주) ( )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 지자체 수 자료: 지역특구 지정현황(2019.1), 중소벤처기업부

### 2) 규제특례 활용 현황

 ● 2018년 11월 현재, 법에서 열거된 132개 규제특례 중 80개 특례(60.6%)가 활용 중이며, 이들 80개 특례를 대상으로 전체 194개 특구에서 총 1,033개 특례를 적용(특구당 평균 5.3개 특례 적용)

구 분	규제특례 수	활용 규제특례 수	규제특례 활용 특구 수
일반적 규제특례	63개	52개	820개
토지이용 규제특례	54개	21개	119개
권한이양 특례	15개	7개	94개
계(특구당 평균)	132개	80개	1,033개(5.3개)

<표 7> 194개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구 분	규제특례명(관련 법률)	활용특구수(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91
	도로통행 제한(제22조 도로교통법)	126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등(제26조 농지법)	65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36조의8 특허법)	59
일반적인 규제특례	도로점용 허가 지체없이 허용(제33조 도로법)	75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등(제20조 출입국관리법)	59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등(제19조 초·중등교육법)	27
	기 타	218
	소 계(적용특례 52개)	820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제40조1항4 농지법)	20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제39조3항2 농지법)	2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등(제39조3항2 농지법)	13
토지이용 규제특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제39조1항2 국토계획·이용법률)	12
	산지전용허가(제40조1항2호 산지관리법)	10
	기 타	42
	소 계(적용특례 21개)	119
	식품 표시기준 완화(제43조 식품위생법)	73
권한이양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제41조 체육시설설치이용법)	9
특례	기 타	12
	소 계(적용특례 7개)	94
	1,033	

자료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및 활용사례집(2018.11),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5. 지역특화발전특구 사례

### 1)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 (1) 개요

- 위치 및 면적 : 인천시 중구 북성동, 선린동 일대, 114,136 m²
- ◉ 시행기간 : 2007년 ~ 2016년
- ⊙ 사업비 : 295억 원
- 특화사업자 : 인천시 중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1883년 인천항 개항 후, 중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중국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 내 중국풍 공원 조성, 중국문화체험시설 설 치,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2) 주요 특화사업

- 중국풍 공원 조성 및 중국문화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 ◉ 청일조계지 정비 및 관광인프라, 테마거리 조성, 자장면 축제 등 이벤트 사업

### (3) 규제특례사항

● 중국인 요리사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규제(특례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와 특구 내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 및 자장면 축제 등 행사시 일부 도로 통행 제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이 있음



출입국관리법 적용 -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



도로교통법 적용 - 특구내 행사 중 차량제한

### 2)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 (1) 개요

- 위치 및 면적 : 대구시 중구 교동·화전동 일원, 74,954 m²
- 시행기간 : 2005년 ~ 2016년
- 사업비: 233.2억 원
- 특화사업자 : 대구시 중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대구 교동 일대는 약 470여 개의 귀금속 관련 업체가 밀집된 귀금속 제조유통의 중심지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귀금속 수리 · 판매 · 가공 시설물을 집적화 · 현대화하고, 공동연구 · 기술개발의 촉진 으로 귀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2) 주요 특화사업

-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및 대구 보석박람회 개최
-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패션주얼리축제 개최 및 홍보

#### (3) 규제특례사항

● 패션주얼리 축제 행사 시 차량통행 제한 허용(특례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 )과 패션주얼리 사업의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허용(특례법 제36조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 이 있음



패션쥬얼리 산업 산학협력



도로교통법 적용 - 특구내 행사 중 차량제한

## 3)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1) 개요

- 위치 및 면적 :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농공단지 외 5개소, 520.631 m²
- ◉ 시행기간 : 2004년 ~ 계속
- ⊙ 사업비 : 87억 원
- 특화사업자 : 원주시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원주시는 산·학·관 클러스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혁신클러스터 시범 단지로 지정(2004년 6월)받는 등 첨단의료기기 산업도시로 부각되고 있음
- 특구지역 내에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유치촉진과 외국인 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특화사업

● 의료기기 생산업체 전용공단 조성 및 국내·외 업체 유치,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 지원 등

#### (3) 규제특례사항 및 기타사항

● 150%한도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특례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외국인 연구원 체류기간 연장(특례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규제 완화 등으로 산업특구를 운영하고 있음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조성



원주 의료기기 진흥센터 조성

# 제 2 절 강소연구개발특구

#### 1. 강소연구개발특구 개요

- 기존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곳의 연구개발특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강소특구 도입이 완료되었음
- 강소특구는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을 의미함
- 강소특구는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을 조성해 R&D특구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표 8> 기존특구와 강소특구 비교

구 분	기존특구	강소특구	
주 체	국립(연), 정부출연(연) 3개 포함 연구기관 40개 이상 대학(이공계 학부 설립) 3개 이상	특구법상 공공(연) 중 기술핵심기관 조건을 충 족하는 1개 이상 기관 소재	
역 량	구체적인 기준 부재	R&D인력·투자, 특허 등 정량기준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등 정성 기준	
면 적	구체적인 기준 부재	총량관리제(배후공간 개별 2km², 전체 20km²)	
협 약	없음	기술핵심기관지자체 협약 체결(지방비 매칭 20%)	

## 2. 지정 신청 및 운영절차

## 1) 지정요건

- 강소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 기술 핵심기관 정성 조건, 강소특구 정성조건 등 3개의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은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비, 특허 출원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액으로 구성됨 (단위: 명, 백만원, 건)

구 분	R&D인력	R&D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	기술이전액
교육기관	450	26,000	145	30	330
연구기관	400	105,000	185	70	1,680
공공기관	280	31,000	100	20	230
기타기관	280	21,000	100	20	230

●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은 강소특구의 거점 기관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조건임

구 분	내 용
	① 기관의 국내외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 수준
네트워크	①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기관 네트워크 현황・실적 및 계획
	②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로 발생하는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공동R&D,인력교류 등)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② 기관의 강소특구 육성 단당성 및 기술사업화 역량 수준
지원 기반 (SW/HW)	③ (공공)기술사업화 적용 여건과 추진·연계의 현황·실적 및 계획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의 관련성·부합성 중심)
	④ 배후공간 연계·활용의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
	③ 기관의 보유 기술과 해당 강소특구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기대효과
육성분야	③ 기술 핵심기관 보유 기술의 상호 관계성·특화성의 현황 및 계획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부합성·활용성 중심)
	⑥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현황 및 계획(위원회의 확인)
지역 발전	④ 기관의 해당 지역에 대한 기술 향상 및 전·후방산업 발전 기여도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효과 중심)
	⑦ ④와 동일
	⑤ 기관의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거점 기능·역할 수행의 충분성
목적/체계	⑧ 기관의 설립 취지, 경영 목적과 중장기 비전·미션, 조직 구조·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 및 계획 측면에서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의 적정성
	⑨ 기관의 조직 구조(구성)·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 및 계획과 수행 사업(과제) 측면에서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의 적합성

주)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R&BD육성사업, 후속성장 지원, 기술금융 연계, 세제감면, 시설구축 등

● 강소특구 정성조건은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 범위에서 강소특구의 기본적인 역량과 발전 잠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항에 관한 조건임

구 분	내 용	비고
*****	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국가R&D 수행, 전문인력·기관 수준의 타당성	직/간접
	① 과학기술혁신 우수성·수월성(기준 대비 절대평가, 역량지수 활용)	직/간접
	② R&D수행 인력 수, 고등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수 등	직/간접
	③ 국가 R&D과제성공률, 국내외 논문/특허 등의 적정 임계규모 수준 여부	간접
혁신 환경	④ 기술 핵심기관 급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유치 현황 및 계획의 타당성	직/간접
	② 지역의 산업 발전·성장 가능성 및 관련 전문서비스 수준의 타당성	직/간접
	③ 첨단기업(대/중견/중소/벤처) 수, 생산/고용/부가가치 성장률, 입지계수 등	직/간접
	⑥ 기술금융(VC/AC), 회계, 법률, 특허 등의 전문서비스 규모 및 수준	간접
uu ㅎ ㅋㅋ	③ 배우공간(개발완료지/개발예정지) 개발계획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배후공간 	⑦ ③과 동일	-
	④ 지역의 국내외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 수준	간접
네트워크	® 지역 중심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동 현황·실적 및 계획	간접
	⑨ 특정분야 중심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간접
TIOL 7181	5 지역의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현황·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직/간접
지원 기반 (SW/HW)	⑩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별표 4 참고) 추진·연계 및 여건의 타당성	직/간접
(000/1100)	⑪ 창업/사업화 보육 및 지원 공간, 공동 장비 및 시설의 연계·활용 실현성	직/간접
	⑥ 지역이 보유한 핵심 기술/산업과 강소특구 육성방향의 연계성·부합성	간접
육성분야	⑩ 핵심 기술/산업의 국가(지역) 전략분야 등의 상호 가치사슬 및 파급효과	간접
	③ 핵심 기술/산업의 세계적 수준 도달 여부 및 경쟁력 확보(위원회의 확인)	간접
	7 지역의 강소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	간접
지역 발전	④ 지방정부의 재정·행정적 노력을 통한 삶의 질(생활수준) 향상(낙후도 개선) 등	간접
	⑤ 신규 창업/IPO 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술사업화 시너지 효과	간접
	图 지역의 경제·환경·생활 여건의 강소특구 유치 충분성	직/간접
일반 여건	⑥ 인구(생산가능), 생산(GRDP), 산업(혁신분야), 고용, 인력 등의 규모 현황 및 계획	직/간접
	⑰ 주거,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복지, 생태, 문화, 여가 등의 관계 현황 및 계획	직/간접

#### <표 9> 평가 방법

정량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4개 이상이고, 정성조건의 항목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요청 타당으로 심 사의견을 도출

정량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3개인 경우 정성조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정요청 타당 또 는 지정요청 반려 중 하나로 심사의견을 도출

판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요청 반려로 심사의견을 도출

- 지정 가능한 강소특구의 총 면적은 20km²이며, 강소특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배후공간의 면적은 2km² 이하로 함
-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3km 이내이어야 하며,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음
- 신규로 지정하는 강소특구의 공간 범위는 해당 강소특구가 소재하는 직접영향권 내로 한정하며, 개별 강소특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10㎞를 초과하여야 함

## 2)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내용

●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 신청서는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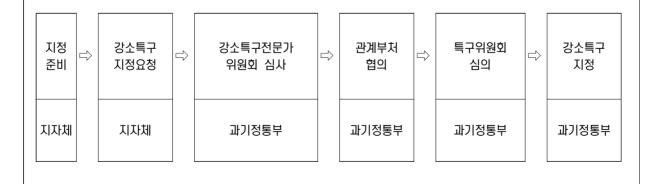
- 1. 개요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3.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 4. 추진 체계 및 경과
- Ⅱ. 현황 및 지정요건
- 1. 해당 지역 및 기술 핵심기관 현황
- 2. 지정요건 충족 증빙 및 확인
- 3. 주민 및 전문가 공청회 결과
- 4. 협약 사항
- Ⅲ.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계획
- 1. 기본구상 및 목표
- 2.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 IV.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
- 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
- 2. 강소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및 활용계획
- 3.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 4.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 5. 이행 재원조달 방안
- 6. 주체별 협력 및 역할분담 방안
- V. 기대효과 및 결론
- 1. 기대효과
- 2. 결론

자료)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7호

## 3)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 후 강소특구 지정 요청

-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사전 협의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강소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장관에게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제출)
- ③ 고시 제12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심사
- ④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의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⑥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 ① 법 제4조제7항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특구의 지정 목적
  -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발예정지가 포함될 경우,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포함)



# 3.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

- ◉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른 지원
- 2019년 지원예산 734억원
- 신규 지정 강소특구 계획상 연간 60억의 국비지원 예상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정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지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지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특구의 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7. 7. 26.〉	

####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수 있다.

## ◉ 세제 지원 및 부담금의 감면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 ●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수의계약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ul> <li>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li> <li>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li> <li>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li> <li>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li>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li> </ul>		

● 독점규제 및 공정거례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특례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 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학교의 설립 운영,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및 운영,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세금,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 특구개발사업 시행시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한 것으로 인정함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허가등의 의제)	()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상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가 이 가 지장 - 성인 형일 및 십고 등에는 "이가동"이라 한다)을 받기나 한 것으로 보여, 제28조제1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응임이 교시된 때에는 다음 각 오의 관계 업회에 따라 한가당으로 보다, 제28조제1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응임이 교시된 때에는 다음 각 오의 관계 업회에 따라 한가당으로 지도 보는 3고가 있는 것으로 보다. 사장 2014. 1, 144., 2014. 5, 28., 2015. 8, 11., 2016. 12. 27., 2017. 2, 8.> 는 "자리 제215억오에 따른 토지의 형례법적 등의 아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때로 조진점임의 어가 신고, "심자관리를 게16조 및 제15조와오에 따른 산자원이가 산자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이가 신고, "심자관리를 게16조로 및 제15조와오에 따른 산자전용이가 산자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이가 신고, "심자관리를 게16조제1명 및 제29세19로 전원보호구역(신원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제2 반대)에서의 형유의 이가 신고의 같은 법 제11조제1양제1양에 따른 신원보호구역(신원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제2 반대)에서의 형유의 이가 신고의 같은 법 제11조제1양제1양에 따른 신원보호구역의 지경에제 5 '독지법 지생소의에 따른 되지의 전용 여가 또는 협의 1. '동지법 지생소의에 따른 되지의 전용 여가 또는 협의 4. '동이원 기업소의 마른 당시전 전용이가 및 같은 법 제32조제 따른 영산관기반시설의 사용이가 및 같은 법 제32조제 따른 영산관기반시설의 사용이가 및 같은 법 제32조제 따른 영산관리관의 협의 또는 3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천관리관과의 협의 또는 3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천관의 하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이천관리관과의 협의 또는 3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천관의 하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이천원을 들이 여가 7. '경유수면 관리 및 매함에 관안 법을 제32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인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인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인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인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인가 같은 법 제35조에 때 대공유수인매점인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인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경우수인매점인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이 제38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이 제38조에 따른 공유수인매점이 제38조에 따른 경우수인매점이 이가 또는 신고 1. '제국도의 제39조에 따른 제38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신고 1. '제국도의 제39조에 따른 교리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기공으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신고 1. '제국의의 경의 또는 3인 및 제35조에 따른 고리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로리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모리 전원으로 및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모리 제35조에 따른 모리 전원으로 및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모리 전원으로 및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모리 전원으로 및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모리 제35조에 따른 모리 제35조에 따른 모리 전원으로 및 제35조에 따른 모리

## 4.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6월 19일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개 지역 일원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음
- 새로운 연구개발특구의 모델인 강소특구 6개가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면 2024년까지 기업유치 1,500개, 고용창출 1만8,600명, 매출 9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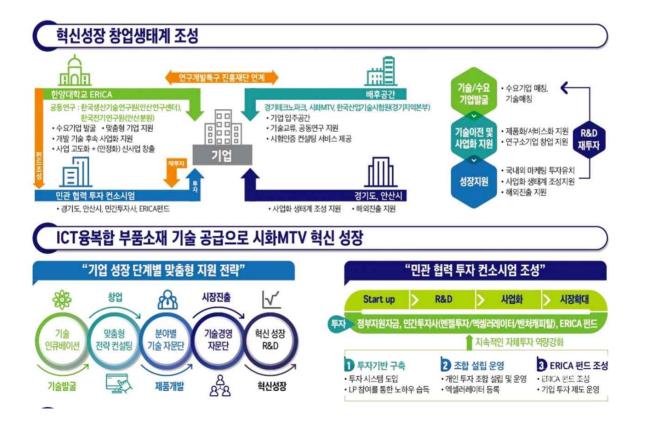
<표 10> 강소특구 배후공간 및 개요

7 H	지정면적		트하나이	
구 분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 특화분야 -	
	1.73km²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0.84km)	사업화촉진지구(0.18km) 사업화거점지구(0.71km)	ICT용복합 부품소재	
	1.1	2km²		
경남 김해	인제대(0.28km)	기술사업화지구(0.40km) 고도화거점지구(0.44km)	의생명·의료기기	
	2.17km²			
경남 진주	경산대(1.14km)	R&D융합지구(0.21km) 기술사업화지구(0.82km)	항공우주 부품·소재	
경남 창원	0.63km²		-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 이미 Ö편	전기연(0.20km)	기술사업화지구(0.43km)	지승선가 가진 가게용답	
	2.75km²			
경북 포항	포스텍(1.67km) 포한산업과학연구원(0.36km)	사업화지구(0.14km) 생산거점지구(0.58km)	첨단 신소재	
충북 청주	2.2	2.20km²		
	충북대(1.14km)	사업화지구(0.79km)	- 스마트IT 부품·시스템	

## 5. 강소연구개발특구 사례

## 1) 경기안산

- 수도권 최초로 강소특구에 지정된 경기 안산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기술핵심 기관을 맡음
- 안산시는 부품·소재의 국내 최대 산업단지 시화MTV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 특성을 이용해 Parts(부품)-Materials(소재)-X=Multiple(융복합) 이노타운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안산은 R&D거점지구(한양대ERICA), 사업화촉진지구(경기TP 등),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단) 3개 지구를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한양대 ERICA는 R&D 거점지구로 지역 기술공급 거점 역할을 맡고, 경기TP 등 협력으로 제조혁신 R&D 융합을 도모해 사업화를 촉진하며, 시화MTV 등 기업이 집적된 산업시설구역이 사업화거점지구로 계획 됨
- 안산은 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516억원, 고용유발 1,139명, 생산유발 효과 1,287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음



## 2) 경남 김해

- 경남 김해는 의생명 특성화 대학인 인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의생명·의료기기 기술사업화의 고도화를 추진함
- 김해는 의생명 분야 연구기관이 28개가 집적돼 있으며, 인제대 부속 백병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어 이러한 지역특성을 이용한 의생명·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임
- 김해는 R&D융합지구(인제대)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단)와 고도화 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가 연계된 1Core-2Booster 전략을 꾀함
- 인제대는 특구R&D의 Core 기능을 수행해 첨단 의료 신기술을 보급하고, 기술사업화지구는 창업·보육과 기술이전 상용화를 지원하며, 고도화거점지구를 통해 공장설립, 기술 고도화를 유도해 기업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
- 김해는 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2,551억원, 고용유발 2,930명, 생산유발 효과 6,551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음

#### 기술사업화 모델



#### 강소특구 육성전략



## 3) 경남 진주

- 경남 진주는 경상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항공기용 핵심부품과 소재를 개발하고자 함
- 진주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완제기 제조업체 KAI 등 항공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항공우주산업 특별시 육성에 대한 진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강소특구선정에 기여하였음
- 진주는 R&D융합지구를 연구 및 인력을 양성하는 경상대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두 곳으로 구분하고, 기업집적구역인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고자 함
- 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1,207억원, 고용유발 1,336명, 생산유발효과 2,627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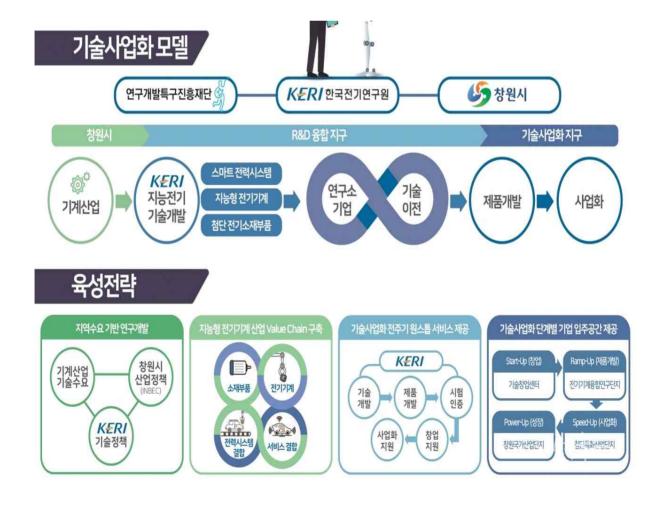


## i 개별 기술사업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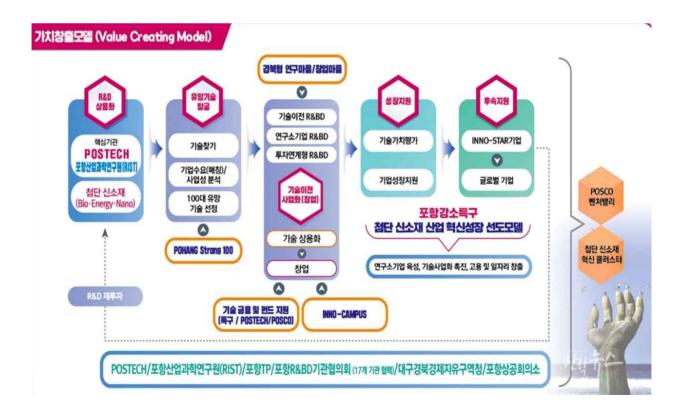
## 4) 경남 창원

- ◎ 경남 창원은 한국전기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능 전기기계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함
- 창원은 기계산업의 메카로 여겨진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굴뚝산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임
- 창원은 R&D융합지구는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지구는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이 배후공간으로 지정됐으며 R&D융합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산업혁신을 가속화하여 지역성장에 견인하는 'Gear Transmission' 전략을 운용
- 창원은 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2,424억원, 고용유발 2,857명, 생산유발 효과 5,268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음



## 5) 경북 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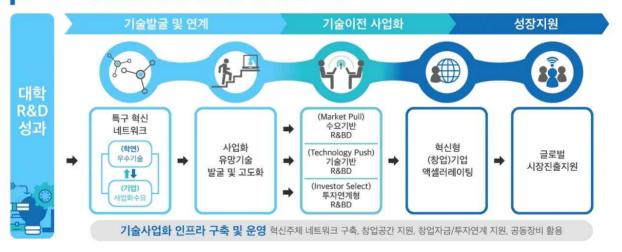
- 경북 포항은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역주도형 첨단신소재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함
- 포항은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지원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이번 강소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기존 철강 중심의 산업 체제를 첨단 신소재로 전환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음
- 포항은 R&D창업지구(포항공대)에서 R&D·창업·인력양성을 맡고, 기술사용화거점지구 (RIST)에서 기술상용화를 꾀하며, 이는 기술사업화거점지구(포항TP)와 연계돼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 생산/창업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임
- 포항은 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3,129억원, 고용유발 5,500명, 생산유발 효과 5,918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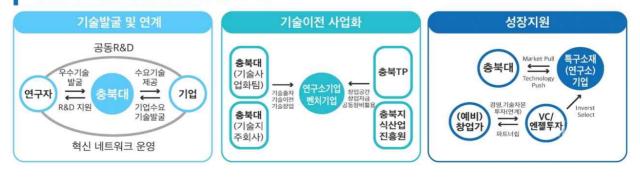
## 6) 충북 청주

- 충북 청주는 충북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스마트IT 부품 및 시스템 거점을 구축 하는 계획임
- 청주는 2017년 스마트IT부품 분야 사업체 908개, 종사자 3만명 등 관련 산업이 집적돼 있으며, 이러한 지역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거점을 조성해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 청주는 R&D지구(충북대 본교)에서 기술 및 인력을 양성하고, R&D특성화지구(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응용기술R&D 및 실증단지를 구축해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단)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청주는 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897억원, 고용유발 2,522명, 생산유발 효과 1,412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음

## R&D - 사업화 - 성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자생적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현



## 제 3 절 소 결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적용가능 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확대지정은 지역의 상징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10년(11곳) 이후 추가로 지정받은 곳이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수립이 예정에 없으며, 지정지역에 대한 운영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음
-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지정에 세제지원, 정책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특례를 활용하여 2019년 1월 기준 151개 자치단체에서 198개의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구의 특례활용은 2018년 11월 기준 194개의 특구에서 1,033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최근 6곳이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에 따른 예산 및 정책 지원,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 가장 많은 지원 혜택으로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시·도 지사가 지정요청 하는 것으로 성남시만의 의지로 추진이 어려움

<표 11> 유사제도 비교

구 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신 청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지자체 → 중소기업벤처부	사도지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효과	- 각종 부담금 면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종) - 각종 안허가 혜택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하천도 로공사 사행 및 점용 등 9종)	- 59개 법률에 대한 132개의 규제특례	-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예산 및 정책 지원 -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 규제특례	
비고	- 2010년 이후 지정신청 없음 - 부산, 부천, 전주 등 지역특 화발전특구 중복 지정 - 입주기업 지원 미비, 세제지원 등 없음 - 중앙정부 지원 정책 없음	- 최근 법개정에 따라 특례 외 예산 지원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으나 수도권 지역은 제외됨 - 132개 규제 특례 중 일부만 활용되고 있음 - 산업연구분야 보다는 향토자원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2019년 6월 6개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 중앙정부차원 예산 및 정책 지원 - 시·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 신청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의 의지로 추진이 어 려움	

# 제 4 장 정책 및 제도 활용방안

- ① 판교권역 여건 분석
- ② 정책 및 제도 활용방안

제 4 장 정책 및 제도 활용방안

## 제 1 절 판교권역 여건 분석

- 1. 판교권역 주요 정책(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는 산업 집적지간 특화 및 연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여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을 통해 아시아 대표 산업혁신도시로 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6>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계획

#### ■스마트시티·ICT융합산업벨트 : 제1·2·3 판교 및 위례비즈밸리

- 제1판교 : 게임 및 문화콘텐츠 중심 거점
- 성남콘텐츠 거리 조성
- 성남e스포츠 페스티벌
- e스포츠 경기장 유치
- ◉ 제2판교 : 미래 신산업 및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 제3판교 : 핀테크 및 아시아 스타트업플랫폼 거점
- 위례비즈밸리: ICT 및 비즈니스서비스 연계 거점

#### ■ 바이오웰에이징 산업벨트 :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연계

- 하이테크밸리 : 의료기기 제조 거점 및 제조업 디지털전화 혁신단지
- 하이컨셉시티
- 기반시설 확충
- 제조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조성
- 야탑밸리: 성남고령친화체험관, 전자부품연구원
- 리빙랩 거점
- 주택전시관,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권역
- 바이오·헬스케어 융합거점

#### ■ 백현 마이스클러스터 조성

- 성남문화산업진흥지구 권역 : 정자, 백현, 수내, 서현
- 국제회의 유치 및 관광명소화

## 2. 판교권역 현황 분석

## 1) 판교테크노밸리 현황

#### (1)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원(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 조성목적 :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연구/개발단지

● 규 모: 661,925 m² (20만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사 업 비 : 5.3조원(토지비 1.4조원, 건축비(민간포함) 3.9조원)

<표 12> 판교테크노밸리 면적 현황

공급용도	총면적	도입기능
계	661천m²	
초청연구용지	48천m²	단지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글로벌R&D 기업 등 초청 유치
일반연구용지	267천m²	R&D를 위한 관련 집적시설, 공동연구센터 등의 연구기능
연구지원용지	118천m²	연구지원 및 단지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능
주차장	228천m²	주차장, 녹지, 도로 등

#### (2) 주요 특징 및 기대효과

● 판교테크노밸리는 수도권 거대 소비시장이라는 광역적 입지 혜택과 함께 서울의 상암DMC, 테헤란밸리, 구로디지털단지, 도내 광교, 안산 등의 지식기반 인프라 집적지와 근접하여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

-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R&D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 R&D센터 등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SK케미칼, 포스코ICT,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안랩, NHN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기술혁신 선도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시스템 반도체진흥센터와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의 SoC센터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잠재력 극대화가 기대됨

#### (3) 입주기업 현황

● 전체 기업 중 IT, BT, CT, NT 등 첨단업종이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IT업종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13>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기업 수	직원 수	매출액
IT	643	46,299	50,801,786
ВТ	103	9,595	12,392,673
СТ	87	11,454	3,669,794
NT	11	142	399,622
기타	158	3,087	2,118,335
합계	1,002	70,577	69,382,210



<그림 7>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 (4) 지원시설 현황

#### 가. 산학연 R&D센터

#### ■ 목적 및 기능

- 판교테크노밸리 내 산학연(기업,대학 및 연구소)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IT/BT/CT/NT간 융합기술 및 창업/보육/교육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 수행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대학연구소를 연계해 연구개발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촉진시켜 인근 연구관련 네트워크 활성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 ■ 사업개요

- 위 치 : 분당구 삼평동 698 (연구지원용지)
- 규모: 연면적 53,054 m² (부지 17,364 m²), 지상 8층/ 지하 2층
- 중사기간: 2013. 10. 31 ~ 2015. 12(착공일: 2013. 10. 31)
- 사 업 비 : 1,609억원(건축 1,231억원, 부지 378억원)





#### 나. 글로벌 R&D센터

#### ■ 목적 및 기능

- 첨단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글로벌 R&D센터 조성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 연구개발 수준의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R&D 협력이 가능한 글로벌 기업 및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과 연계 및 상생방안 마련

#### ■ 사업개요

- 위 치 : 분당구 삼평동 696-1,2 (초청연구용지)
- 규모: 연면적 46,488 m² (부지 12,578 m²), 지상 6층/ 지하 2층
- 입주기업: GE, 싸토리우스, KETI, ETRI, 이수앱지스, 코오롱생명과학
- 공사기간 : 2010. 3. 19 ~ 2012. 4. 17(준공)
- 사 업 비: 1,128억원(건축 850억원, 토지 278억원)





#### 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 목적 및 기능

- 각 지역 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IT/게임/차세대 통신 등의 특화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함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누구나 이용/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업· 연구기관·지역 대학·지자체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

### ■ 사업개요

- 위 치 : 분당구 삼평동 629(연구지원용지)
- 규모: 연면적 28,499 m²(부지 3,608 m²), 지상 10층/지하 6층
- ⊙ 공사기간 : 2011. 1. 26 ~ 2013. 5. 24(준공)
- 사업비: 484억원(토지 81억원, 건물 403억원)
- 주요시설 : 입주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실, 회의실, 국제회의장, 컨설팅 등 제공

#### ■ 주요사업

- 글로벌 히트게임 벤처 창업 육성
- 게임인프라 구축
- 차세대 게임 스타트업 육성
- 글로벌 마케팅 및 전시회 참여 지원
- 핀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
- 핀테크지원센터 설치
- 금융회사 공동 공모전 및 사업화 지원
- 핀테크 기술벤처 육성(SW 융합클러스터 연계 개발지원)
- IOT 혁신기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
- 안심보육, 비만관리 등 시범사업 진행
- 헬스케어 및 안전분야 스타트업 육성
- 차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 지원
- Innovation Lab 구축 및 운영
- 핵심응용서비스 스타트업 육성
- 차세대 이동통신 시범단지 구축
- 글로벌 진출 허브 조성
- 전국 혁신센터와 연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 전국 혁신센터 공동 브랜드로 해외전시회 참가
- 글로벌 투자박람회 개최





## 2)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황

## (1) 조성사업 개요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 면적: 430천㎡ (1구역: 도공부지 223,026㎡, 2구역: GB용지 207,376㎡)

● 사업기간 : 2015.11월 ~ 2019.12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65%), 경기도시공사(35%), 경기도,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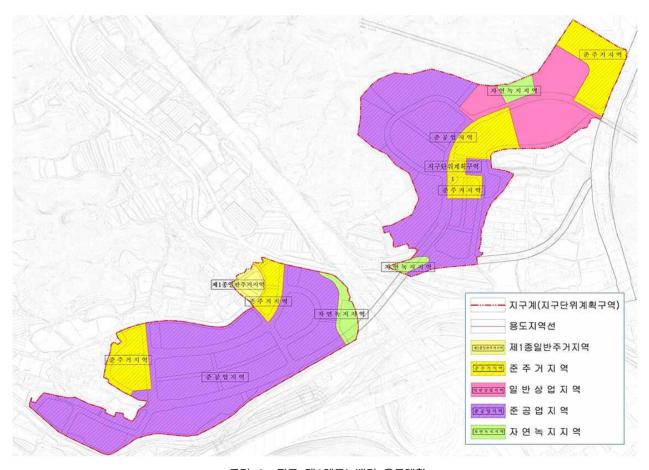
<표 14>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도계획

구분	면적(m²)	1구역	2구역	구성비(%)
합계	430,402	223,026	207,376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	_	5,679	1.3
준주거 지역	76,060	49,100	26,960	17.7
일반상업지역	47,781	47,781	-	11.1
준공업지역	285,990	119,004	166,986	66.4
자연녹지지역	14,892	7,141	7,751	3.5

## (2) 사업목표

●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를 통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함

창업공간 선포프로젝트 추진 (기술혁신과 창업인프라 조성)	1. 창업공간 선도프로젝트 추진 2.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3. ICT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4. ICT-문화 융합 허브 조성
기업 성장단꼐별 맞춤형 사업공간 제공	5. 공공주도 기업 성장공간 조성 6. 민간 벤처육성·혁신기업공간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산학협력체계 구축	7.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8. 산학협력 공간 조성
소통 교류가 활발한 매력적인 도시 조성	9. 소통·교류가 활발한 도시 조성 10. 미래형 도시 인프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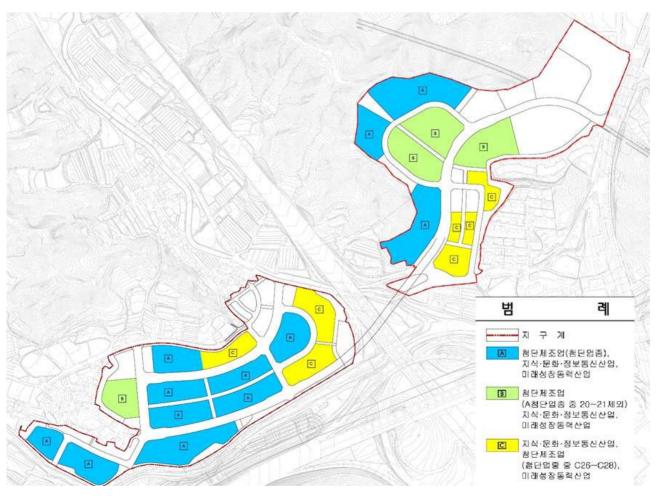
<그림 8>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도계획

## (3) 유치업종 배치계획

● 21세기 차세대 성장 유망업종과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유치업종 선정

<표 15> 판교 제2테크노밸리 유치 업종

7 8		면 적(m²)	
	구 분		복합용지
	합 계	139,594	(62,581)
А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79,793	(41,863)
В	첨단제조업(첨단업종 C20,21제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22,913	(20,718)
С	첨단제조업(C26~C28),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36,888	-



<그림 9>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 제 2 절 정책 및 제도 활용방안

#### 1.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원정책은 없으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정책을 위해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연계하여 판교테크노밸리와 하나의 특구로 지정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가칭) 성남 게임.문화콘텐츠특구(문화산업진흥지구, 판교테크노밸리)

#### ■ 규제특례를 통한 각종 제약 완화 및 사업효과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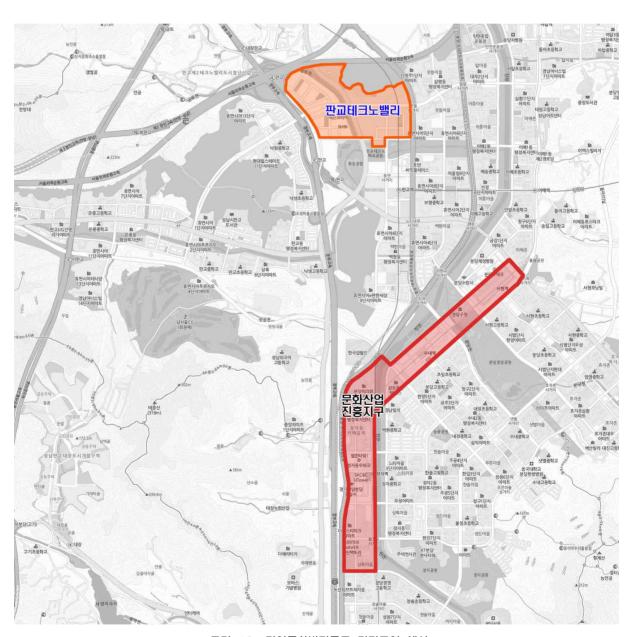
- 외국인 직원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와 기간을 완화하여 우수인력 활용도 증대
- 행사기간 주변도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
- 광고물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특화사업의 홍보효과 강화
- ◉ 도로 점용허가를 통한 행사 홍보, 안내공간 확보
- ◉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통한 행사공간 확보
-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 투자심사 제외를 통해 사업절차 간소화 및 사업 자율성 증대

#### <표 16> 적용가능 특례

규제특례	적용가능 내용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외국인 직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사증발급절차 완화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게임축제, 문화행사 등 진행시 주변도로 차량통행금지 및 제한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축제 행사 등의 홍보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도로점용을 통해 행사 기간 동안 홍보·안내공간을 확보가능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구관련 행사 임시 시설물 도시공원 점용허용 및 설치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구내 특화사업과 관련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속한 처리	
제60조의(「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에 포함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투 자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특례 적용	

#### ■ 관련산업 육성 및 지역자원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 성남시의 게임·문화콘텐츠 산업 자원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및 관광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민·관·학 협동을 통해 산업 및 문화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체험 관광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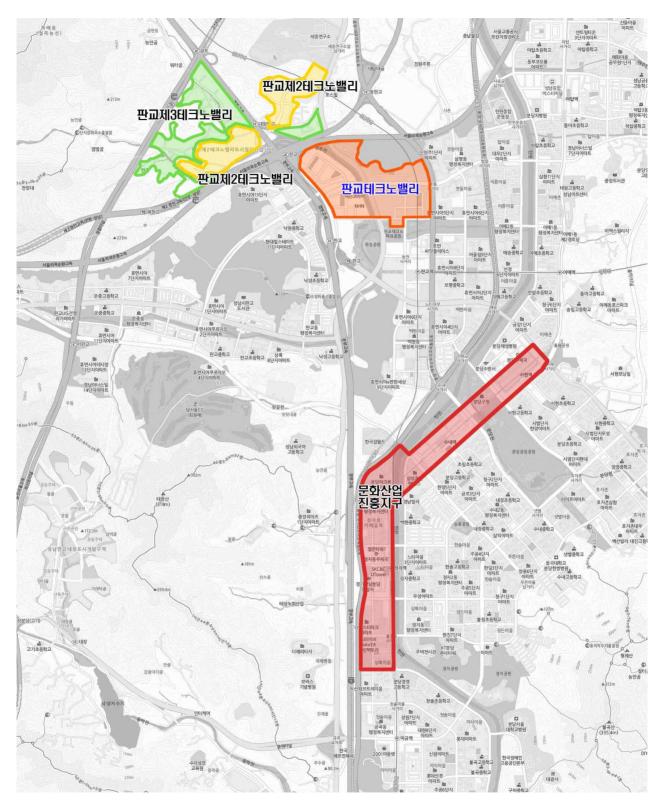
<그림 10>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구역 예시

#### 2. 강소연구개발특구

-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고밀도 연구단지 조성 사업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시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 국비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이 주어짐
-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 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 간 100%) 감면혜택이 있음
- 따라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입주기업에 직접적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성남시에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지정 요청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성남시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성남시에 위치한 대학교,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판교1, 2, 3 테크노밸리 또는 하이테 크밸리 구조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성남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 ■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국비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R&DB 사업비 지원
- 2019년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예산 734억원
- 안산시 강소특구지정에 따른 지원은 계획상 5년간 국비 300억원, 도비 18억원 지원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대상 세제 감면
- 국세 감면 :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 개발행위 의제 처리 및 기반시설 국비 지원
- 개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 등 감면



<그림 11>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예시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9	၀-
-----------------	----

① 결론 및 정책제언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 1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판교권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됨
- 지구지정에 따른 혜택이 개발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부담금의 면제, 안허가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판교 권역의 경우 해당사항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 예정이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지구의 운영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통해 지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지정요청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성남시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법적 제약요인이 있음
-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판교권역의 문화산업 진흥지구 추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원정책은 없으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판교권역에 적용시 규제특례를 통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효과 증대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 직원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와 기간을 완화하여 우수인력 활용도 증대
- 행사기간 주변도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
- 광고물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특화사업의 홍보효과 강화
- 도로 점용허기를 통한 행사 홍보 안내공간 확보
-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통한 행사공간 확보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 투자심사 제외를 통해 사업절차 간소화 및 사업 자율성 증대

- 현재 문화산업진흥지구와 판교권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통합 지정을 통해 성남시의 게임·문화콘텐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및 관광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여건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며 실현가능하나 향후 판교 2, 3밸리의 조성과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가 지정 또는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지역발전 및 시민, 입주기업 요구를 반영한 사업 검토가 필요 할 것임

부 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부 록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향토자원	4차지정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3차지정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교육	13차지정
	중 구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의료·복지	31차지정
	강남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관광레포츠	15차지정
	관악구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교육	22차지정
서울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33차지정
	성동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교육	35차지정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의료·복지	35차지정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37차지정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교육	39차지정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의료·복지	42차지정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교육	45차지정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2차지정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동 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12차지정
부산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관광레포츠	20차지정
	금정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교육	28차지정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35차지정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39차지정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향토자원	1차지정
 대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연구	6차지정
니 내구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산업·연구	9차지정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42차지정
01+1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3차지정
인천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11차지정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향토자원	25차지정
광주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교육	25차지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42차지정
대전	동구,중구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39차지정
0.11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울산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광레포츠	15차지정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4차지정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교육	6차지정
	ОЕПЕ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양평군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관광레포츠	38차지정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산업·연구	8차지정
		고양 전시문화특구	산업·연구	19차지정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향토자원	10차지정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관광레포츠	15차지정
7471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17차지정
경기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향토자원	23차지정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관광레포츠	26차지정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산업 •연구	29차지정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관광레포츠	35차지정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관광레포츠	38차지정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산업·연구	41차지정
	광명시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교육	42차지정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교육	42차지정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산업·연구	43차지정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연구	3차지정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	10차지정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관광레포츠	4차지정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산업·연구	5차지정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관광레포츠	10차지정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연구	16차지정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16차지정
강원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관광레포츠	20차지정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향토자원	23차지정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향토자원	32차지정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향토자원	32차지정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향토자원	37차지정
	강원도,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상군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	33차지정
χH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	3차지정
충북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충북		옥천 옻산업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14차지정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산업·연구	7차지정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12차지정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레포츠	18차지정
	청주,충주, 청원,증평, 진천,괴산,음성	충북 태양광특구	산업·연구	23차지정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30차지정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향토자원	3차지정
	급인포 	금산·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	33차지정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논산시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10차지정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	12차지정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향토자원	13차지정
	홍성 · 예산군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16차지정
충남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향토자원	32차지정
5급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	13차지정
	시신문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3차지정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4차지정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관광레포츠	16차지정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고조니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20차지정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향토자원	20차지정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향토자원	38차지정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연구	1차지정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복지	16차지정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1차지정
		고창 경관농업특구	관광레포츠	1차지정
전북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	4차지정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부안군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연구	11차지정
전북	김제시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연구	36차지정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관광레포츠	20차지정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23차지정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향토자원	35차지정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향토자원	36차지정
	7411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차지정
	순천시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여수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7차지정
	어구지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8차지정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관광레포츠	4차지정
	= 0T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	7차지정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관광레포츠	8차지정
	HOT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15차지정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장흥군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레포츠	14차지정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향토자원	41차지정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10차지정
	당인 <u>간</u>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츠	17차지정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13차지정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교육	17차지정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향토자원	35차지정
전남	광양시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교육	14차지정
TO	304	광양 매실산업특구	향토자원	14차지정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222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향토자원	41차지정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17차지정
	고흥군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36차지정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	17차지정
		영광 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	19차지정
	완도군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향토자원	22차지정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향토자원	20차지정
	구네 <u>년</u>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향토자원	25차지정
		나주 배산업특구	향토자원	20차지정
	나주시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교육	38차지정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향토자원	22차지정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22차지정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교육	23차지정
전남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29차지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유형	위원회 차수
		진도 울금산업특구	향토자원	43차지정
	무안군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학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향토자원	35차지정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교육	36차지정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향토자원	38차지정
	CHO!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관광레포츠	3차지정
	영양군	영양 고추산업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향토자원	4차지정
	사지니	상주 곶감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상주시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영덕 대게특구	관광레포츠	6차지정
	영덕군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 ·연구	13차지정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관광레포츠	37차지정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7차지정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향토자원	7차지정
	검신시	김천 자두산업특구	향토자원	10차지정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경북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07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교육	12차지정
	6구시	영주 힐링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관광레포츠	12차지정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	12차지정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	13차지정
	OIL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교육	26차지정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교육	15차지정
	고령군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광레포츠	15차지정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향토자원	15차지정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관광레포츠	38차지정
	차녀그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2차지정
	창녕군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향토자원	38차지정
경남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3차지정
о́ <b>п</b>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관광레포츠	4차지정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29차지정
경남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관광레포츠	36차지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산업 •연구	45차지정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교육	6차지정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7차지정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산업 •연구	12차지정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관광레포츠	19차지정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향토자원	33차지정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향토자원	38차지정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관광레포츠	41차지정
제주	서귀포시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1차지정
	시파보시	서귀포휴양예술특구	관광레포츠	30차지정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향토자원	17차지정